

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

제 158 호
2017년8월21일(월)

여 수 시 보

시 정 방 침

- 1. 함께하는 소통시정
- 1. 활력있는 지역경제
- 1. 수준높은 교육복지
- 1. 앞서가는 해양관광
- 1. 걱정없는 안전사회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목 자

【공 고】

- 여수시 공고 제2017-1642호 「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」 입법예고 /3
- 여수시 공고 제2017-1657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(제2017-1657호) /11

회 관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공 고

「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 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8. 21.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」 입법예고

1 개정 이유

- 법제처 협업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대상
 - 약칭할 필요가 없는 조항에 대해 전체 법령명 기술
 -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규정 삭제
- 동백열차 탑승료 현실화에 따른 시설 사용료 관련 규정 개정 필요
 - 여수시민 탑승료 50% 할인제도 도입

2 주요 내용

- 제명 변경
(현행) 「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」
(개정) 「여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」
- 중복사항이나 오동도 관리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 등 일부 조항 삭제
(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8조, 제13조)
- 동백열차 탑승료 요금조정
 - 현행 4단계(400원,500원,600원,800원)에서
 ➔ 2단계(500원, 1,000원)로 현실성 있게 조정
 - 여수시민 할인제도 신설 : 탑승료 50%할인

3 관계 법령

- 자연공원법 및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

4 입법예고기간

- 입법예고기간 : 2016. 8. 21. ~ 2017. 9. 10.(20일간)

5 개정조례안

- 개정조례안 : 별첨 참조

6 의견제출

-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(공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제출 사항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.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- 주 소 : 우)59683 여수시 오동도로 222

(수정동, 오동도관리사무소)

- 받는 사람 : 여수시장(공원과장)

- 전 화 : 061)659-1821, 팩스 : 061)659-5852

- 이 메 일 : wyi11@korea.kr

○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 제출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

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여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연공원법」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여수시장이 지정·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, 사용료 및 점용료의 기준과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입장료)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·관리하는 자연공원(이하 “공원”이라 한다)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.

제3조(시설사용료) ① 시장이 설치한 공원시설(이하 “공원시설”이라 한다)의 사용료(이하 “시설사용료”라 한다)는 별표와 같다.

②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표소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료를 게시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설사용료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.

1. 국민,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
2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3. 「자연공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의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
4.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임원
5.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(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(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1. 65세 이상인 사람
2. 여수시민
3. 청소년(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및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. 대학생. 대학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어린이

제5조(안내소)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6조(안전대책 등) 시장은 동백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점용료등)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(이하 “점용료 등”이라 한다)의 요율에 관하여는 「자연공원법 시행규칙」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점용료등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경우 해당 일수가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,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.

제8조(점용료등의 징수) 점용료등은 허가를 할 때 전액 징수 한다.

제9조(점용료등의 감면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인 경우
2.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제10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공원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시설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분	요금	비고
어른	1,000	※ 편도요금임
여수시민, 청소년 어린이, 경로	500	
국가유공자 장애인 4세 이하	무료	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 조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7조 ⇒ 국공립 공원 시설 이용료 무료

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

여수시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신조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8. 21.

여 수 시 장

1. 최초사용(폐기)일 : 2017. 9. 1(금)
2. 등록사유 : 조례 개정에 따른 공인 신조 및 폐기
3. 신조 및 폐기공인 내역

구분 (관리번호)	공 인 명	인 영	관리부서	등록 사유
신조 (1599)	여수시옥외광고발전기금 회계지출원인		도시재생과	여수시옥외 광고발전기금 설치및운용 조례개정 (명칭변경)
폐기 (1309)	여수시옥외광고정비기금 회계지출원인		도시재생과	"